

의 안 번 호	1465	【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8. 23.(목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8. 24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9. 12.(수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보고서를 심의·의결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조성 총괄 (단위 : 원)

전 년 도 말 조 성 액 ㉠	당해연도 증감액			당 해 연 도 말 조 성 액 ㉡=㉠+㉢
	계 ㉢=㉠-㉣	조성액 ㉣	사용액 ㉣	
2,772,384,720	37,128,760	37,128,760	0	2,809,513,480

○ 기금운용명세 (단위 : 원)

수 입			지 출	
계	예치금회수	이자수입	계	예 치 금
2,809,513,480	2,772,384,720	37,128,760	2,809,513,480	2,809,513,480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

5. 검토의견 : 없음

근거법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**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9.>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